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,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222호, 2023. 1. 17. 공포, 2023. 7. 18. 시행)됨에 따라,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(제13조제2항 및 제4항)

-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국세환급가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

2) 환수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은
체납된 참전명예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
하되, 연체금 부과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
나.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(제13조제5항 및 제6항)

납부의무자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
하는 경우에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
게 할 수 있도록 함

다.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(별표2)
생계지원금 지급 및 상속인에 대한 참전명예수당등 환수처분을 위해
필요한 경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정보 및 「상
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과 그 이자(이하 “환수금”이라 한다)를 환수 처분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처분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(상속인을 포함하며,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.

②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 대상 참전명예수당등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참전명예수당등”이라 한다)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

1. 이자율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

2. 기간: 환수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

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. 다만,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참전명예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.

③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.

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(이하 이 조에서 “연체금”이라 한다)은 환수금 납부기한(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,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)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수참전명예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참전명예수당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

여 산정하며, 회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,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참전명예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.

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

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

3.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
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,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법 제36조제3항”을 “법 제36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계급·군번·성명·본적”을 “계급·군번·성명·등록기준지”로 한다.

별표 2에 제7호의2, 제18호의2,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

18의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

정보

20의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

20의3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3조(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)</u> <u>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 등(이하 “참전명예수당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(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)에게 참전명예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</u> <u>1.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</u> <u>2.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</u> <u>3.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</u> <u>4.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</u> <u>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</u>	<u>제13조(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)</u> <u>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과 그 이자(이하 “환수금”이라 한다)를 환수 처분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처분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(상속인을 포함하며,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.</u> <u>②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대상 참전명예수당등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참전명예수당등”이라 한다)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</u> <u>1. 이자율: 「국세기본법 시행</u>

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고
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
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
야 하며,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
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
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
에게 보내야 한다.

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
따른 이자율

2. 기간: 환수참전명예수당등을
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
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
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
월 수. 다만, 환수처분의 통지
전에 환수참전명예수당등을
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참전
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
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
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
지의 개월 수로 한다.

- ③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
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
은 재산의 한도는 「국세기본법
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라
산정한다.

-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체
금(이하 이 조에서 “연체금”이
라 한다)은 환수금 납부기한(이
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
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
하며,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
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
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

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
일을 말한다) 다음 날부터 그
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
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
수참전명예수당등에 연 100분
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
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
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
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
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
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
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
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,
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
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
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
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
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
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
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참전
명예수당등에 제2항제1호에 따
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,
회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

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,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참전명예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.

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

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

3.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
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,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.

제14조(결손처분) 국가보훈처장은

제14조(결손처분) -----

<u>법 제36조제3항</u>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“보훈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제15조(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 무 면제사유) ①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1.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<u>계급·군번·성명·본적</u>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.·3. (생략) ② (생략)	<u>법 제36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15조(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 무 면제사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 <u>계급·군번·성명·등록기준지</u> 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0